

BEYUL accounting corporation

# 월간 뉴스레터

2024 년 3 월호

회계법인 베울의 뉴스레터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회계·세무 분야의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적용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당사의 전문가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의 자료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이 있어 사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베울소식

| BEYUL 4본부 Tax전문팀 소개

### 회계&세무 뉴스

|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DART 편집기 제출인 편의 기능 개선 사항

|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 최신예규판례 및 조세뉴스

|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3-상속증여-3832, 2024.03.07.)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 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소득-2095, 2024.03.07.)

|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5564, 2024.02.29.)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

▪ **BEYUL Tax전문팀 소개**

회계법인 베을의 4본부는 감사(Audit), 재무자문(Deal Business), 세무자문(Tax)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각각의 팀으로 구분되어 고객에게 팀별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분야의 자문요청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 체계를 갖춘 회계법인 베을의 전문가 조직으로, 매년 Client, Revenue, Member 등 다방면에서 회계법인 베을을 이끌고 있는 Leading Division입니다.

특히, 세무자문(Tax)팀의 경우 내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서 세무자문, 예규신청지원, 세무조사지원, 경정청구, 조세불복 등 전통적인 Tax 업무 외에도 상속·증여에 관한 가업승계 및 재산이전자문, Inbound & Outbound 국제조세자문 업무를 기업유형을 가리지 않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지원팀]**은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일반자문 및 신고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활용 검토, 승계 시기, 주식평가액 축소 전략, 기업의 구조개편, 후계자의 납세재원 마련 방안 등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창업자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합병 및 분할을 통한 기업 구조 개편
- 가업승계 증여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승계플랜 수립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대리 및 조사 지원
- 배우자 지분 정리 및 명의신탁 주식 해소방안 검토
-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등 기업 내부거래에 따른 세무리스크 점검

**[국제조세서비스팀]**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투자법인 및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TP) 이슈를 포함한 거래가격 관련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회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compliance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들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APA(이전가격 사전합의, Advance Pricing Agreement)와 MAP(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을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이슈에서 자유롭고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내 거래에 대한 세무자문 및 신고 대행업무를 통해 국내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한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조정, 세무자문, 세무조사지원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작성제출
- APA, MAP(상호합의) 대리
- Global TP Policy 구축
- 비거주자 세무자문 및 신고대행

---

[이력사항]

**김현태 Tax Partner / KICPA**

/ htkim@beyul.co.kr

2010~2017 삼일회계법인

2017~ 회계법인 베울 4본부

現 회계법인 베울 4본부장

現 (사)대한하키협회 감사

**박한수 Tax Partner / KICPA**

/ hspark@beyul.co.kr

2008~2017 삼일회계법인

2021~ 회계법인 베울 4본부

現 회계법인 베울 가업승계지원팀장

現 지방공기업평가원 외부위원

**이승주 Tax Partner / KICPA**

/ seungjoolee@beyul.co.kr

2010~2016 삼일회계법인

2016~2023 김·장법률사무소

2023~ 회계법인 베울 4본부

現 회계법인 베울 국제조세 팀장

現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

■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은 합병에 준하는 중요한 행위로 보아 합병관련 개정사항을 준용

1.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현재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 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 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 보고서의 첨부 서류에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병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위임한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였다. 합병 관련 업무수행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였다.

또한, 규정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했다. 기업에게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서 관여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대조된다.

\* 상장사의 경우, 기준시가를 다음 방식에 따라 결정: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제도개선은 '경제적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서 '대등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계열사간 합병(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합병가액 산정 시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측면)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외형상 합병의 형식을 취하나, 비상장회사의 IPO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경제·금융단체, 외부평가기관,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기업 합병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M&A 제도개선 간담회(24.2.6일)」, 「기업 M&A 지원방안(23.5.8일)」, 「기업 M&A지원 세미나(23.3.27일)」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3.5일(화)부터 4.15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2024.3.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DART 편집기 제출인 편의 기능 개선 사항

□ 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 제출인(약 162,000명)이 공시서류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DART 편집기\*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제공 서식(530여종)에 맞게 문서를 작성·편집하는 기본 기능 외에, 작성지침 조회, 제출 등 공시업무에 특화된 기능이 탑재된 작성 프로그램

<DART 편집기 주요 개선사항>

공시서류 작성 편의성 개선	▶사업·분·반기보고서 간 자동변환, PDF 파일 첨부 기능 신설 ▶키워드 찾아 바꾸기, 글꼴 모양 등 복사 기능 신설 ▶상용프로그램(한글, 워드 등)과의 호환성·안정성 등 개선
공시내용 자체 점검지원	▶오타, 띄어쓰기 오류 등을 쉽게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맞춤법 검사 기능 신설 ▶표의 블록 합계·평균·곱셈 등 수식 자동 계산 기능 신설
공시 열람 편의 개선	▶공시서류 내에서 특정 항목으로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하이퍼링크 설정 기능 신설(예: 요약정보→본문)

※ 공시서류 제출인은 누구나 금융감독원 DART 접수홈페이지(<https://filer.fss.or.kr>)에 접속하여 「DART 편집기」를 다운로드 받거나 기존 편집기를 업데이트하여 사용 가능

□ 제출인 편의기능이 개선되어 공시 담당자는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시 작성·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 오류 감소로 공시 신뢰도가 제고되고, 문서 내 주요 항목간 이동이 용이하여 공시이용자의 열람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출처 : 2024.3.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인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입니다.
-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정지원 내용 요약>

구 분	납부세액 발생	환급세액 발생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직권 연장 (4. 1. → 7. 1.)	환급금 신속 지급 (30일 내 → 10일 내)

-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에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2.28.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28~3.13.)·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I. 주요 개정사항

####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15/15/25%) 적용(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
  -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 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 (개정안)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 54개 시설로 확대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분야	추가 시설(신규 4개, 확대 1개)
반도체	▶(확대: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 →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디스플레이	▶(신규: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
수소	▶(신규: 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건/중소-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6/10/18%) 적용(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 확대4)하여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

분야	추가 시설(신규 7개, 확대 4개)
바이오 헬스	▶(확대: 2개) 혁신형 신약 / 개량신약 제조시설 → 원료 개발·제조시설 추가
에너지 환경	▶(신규: 3개)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 영구정지원전 해체 및 방폐물 처분 관련 기술 ▶(확대: 1개)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원자로) 제조시설 →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등 추가
탄소 중립	▶(신규: 1개) 암모니아 발전 시설 ▶(확대: 1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 → 항공유 생산시설 추가
방위 산업	▶(신규: 3개)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척·소득·법인·부가·관세)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 (현 행) 정기에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2.9%\*

\* 환급가산금 이자율(%): ('17)1.6 ('18)1.8 ('19)2.1 ('20)1.8 ('21)1.2 ('22)1.2 ('23)2.9

-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3.5%

\* ① 1년 만기 정기에금 年평균 수신금리(%): ('22) 3.11 → ('23) 3.84

② 1년 만기 정기에금 月별 수신금리(%): ('23.11) 4.18 → ('23.12) 3.88

- (적용시기) ①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간주임대료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II. 기타 개정사항

### 1.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 (현 행)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8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2년)

- (개정안)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5년) 적용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

\*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 가능

-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규정

###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현 행) 1백만원 이하: 10%, 1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 (개정안) 5백만원 이하: 10%, 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810만원

####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면세대상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서식 신설
  - \*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신고서
- '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26.6월 최초신고)를 위한 전 세계 공통 신고 서식(GIR: GloBE Information Return)을 신설

(출처 : 2024.2.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최신예규판례 및 조세뉴스

■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서면-2023-상속증여-3832, 2024.03.07)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합병법인")은 1996.7.1.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버지(이하 "증여자")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증여자는 상증령§19②의 최대주주에 해당함.

\* 발행주식 160,000주(보통주, @5,000), 중소기업에 해당함

<합병법인 주주 현황>

주주	소유주식 수	지분율	비고
아버지(증여자)	112,000	70%	대표이사 재직 중
어머니	32,000	20%	
아들(수증인)	16,000	10%	
합계	160,000	100%	

○ 소멸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합병법인과 동일한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증여자의 배우자임.

\* (주주현황) 증여자 18,000주(45%), 증여자의 배우자 22,000주(55%)

○ 합병법인은 2015.7.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합병법인이 존속법인임(합병등기일:2015.7.2.)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지 않음

○ 아들(이하 "수증인")은 2014.9.1. 합병법인에 입사하여 재직 중으로, 증여자는 수증인에게 소유주식 112,000주 중 77,000주를 증여할 예정임.

(질의내용)

○ 가업영위기간(10년)을 충족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250, 2012.07.04.>)를 참고하기 바람.

○ 상증, 재산세과-250(2012.07.04.)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함.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 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2095, 2024.03.07)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법인 대표자는 20.1.1. 취임한 후 22.12.31. 퇴직함.
- 법인의 정관에는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무보수 기간과 보수 기간이 혼재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0	0	0	0	0	0	0	0	0	0	0	0
2021년	0	0	0	0	0	0	0	3	2	4	5	0
2022년	0	0	0	0	0	0	0	2	3	3	5	0

(질의요지)

-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시 무보수 근로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같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계산상 포함하는 것임.

■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022-법규법인-5564, 2024.02.29)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8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자 함.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2년 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약 XX.X억원임.
- 중간정산액 중 X~X억원은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사의 가지급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 질의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과 그 특수관계자로 구성

(질의내용)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후, 주택취득 후 남은 금액으로 가지급금 상환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재법인-80, 2024.2.14.>)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2024. 2. 14.)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375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 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취하였는데, 위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등(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7.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방법을 적용하고,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중국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 합계 1,549,721,453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을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020. 10. 27. 당초처분 중 해당 세액 부분(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2.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 2 상고이유)

가.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은 제23조 제1항에서 한국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이를 대체하였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목에서는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①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세액공제 방법)과 ②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위 개정 지방세법은 제103조의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규정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의 해석방법이나 이 사건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제3 상고이유)

원심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계법인 베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7, 5 층(삼성동, 이케이타워)

T. 02-569-8994 | E. beyul@beyul.co.kr

[수신거부 Unsubscribe](#)